

직권조치결과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5년 09월 08일

정남면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리 *아카보당	리 *아카보당 1984-04-29	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덕절중앙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09-01